



의사의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자격과 등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계약 체결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하며, 품위유지의무 등이 부과되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품행까지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이 있다. 누구에게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음에도 직업의 성격상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어 직업을 수행하는데 법으로 규정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직업, 바로 내가 하는 일, 변호사라는 직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격에 대한 판례는 일찍이 존재했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그런데 최근 의사의 활동 역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의사의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 소속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8. 2. 28. 각 퇴직하면서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2심)은 원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퇴직 후 15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즉, 원심은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인으로써 의사가 의료기관에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등 지급의 지연이 이루어진 날인 퇴직 후 1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②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며(제2조 제2항 제1호), ③ 의사의 자격과 면허는 엄격히 제한되고(제5조, 제8조 내지 제11조 등),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가 금지되어 계약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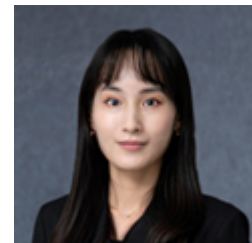


료광고에 제한이 있으며(제15조, 제56조), ⑤ 의료행위와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재 등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는 등(제12조, 제13조) 법령상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의사의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퇴직 후 1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한 연6%의 상법상 지연이자율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연 5%의 민법상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의사가 자신의 직장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지연이자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여야 할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의사라는 직업의 속성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므로 의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 행위와 관련된 것일지라도 상인의 행위에 준하여 상법 및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의사의 경우 영업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적인 예방 작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TEL. 02 565 9801

E-mail. jhson@lkpartner.co.kr